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(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)



구 미 시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(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 이유

- 가. 2013년 경북지역 공약사업(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)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('15.11.23)되어 구미시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¹⁾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, 산업부의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
- 나. 금오테크노밸리 內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준공되었고, 웨어러블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마련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2. 감면 내용

가. 감면 개요

- (1) 감면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3) 사용(감면)기간 : '21. 1. 1. ~ '25. 12. 31. (5년)
- (4) 사용(감면)면적 : 2,263㎡(1층 1,133㎡, 2층 1,130㎡)

나. 감면 필요성

- (1)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, 지원센터

1) 인체부착 및 착용형 스마트기기(소방방재용 스마트 헬멧, 생체정보 수집용 의료기기, 스마트 가전제품 등)

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장비 활용성 제고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기반 마련의 거점 역할 기대

- (2)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의 출연기관으로 관련법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)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,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

3. 사업 내용

가.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 - (2) 규 모 : 연면적 4,167m², 지상 4층
 - (3) 사업기간 : '16. 10. 1 ~ '20. 12. 31 (51개월)
 - (4) 사 업 비 : 168.2억(국 75, 도 32.8, 시 60.2, 민자 0.2)
- (※ 센터건립 46, 장비구축 100, 운영 22.2)

나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3. 3. :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(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)으로 추진
- 2015.11. :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
- 2016.10. : 과기부 · 경북도 · 구미시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
 -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: 센터 구축 주관기관 선정
- 2017. 8. ~ 2018. 4. : 상용화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
- 2018.10. : 센터 개소, 3차년도 장비구축 및 운영
- 2019.10. : 4차년도 장비구축 및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공동 R&D 추진
- 2020. ~ :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거점화, 선도기업 창출

다. 기대효과

- (1) 중소기업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·제품화부터 시험·검증, 통신망 연동테스트를 통해 5G 웨어러블 혁신제품·서비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
- (2) 본 구축장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
- (2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

■ 위치도



■ 조감도



관계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소 관 부 서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창 열
	담 당	채 창 수
	담 당 자	김 충 현 (480-6172)